

심사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07
----------	-----

2018. 4. 5. (목)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정영수 의원 등 6인

나. 발의일자: 2018년 3월 14일

다. 회부일자: 2018년 3월 15일

라. 상정일자: 2018년 3월 27일

(제3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정영수 의원)

가. 제안이유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다자녀 학생의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정부의 출산 장려정책에 부응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에 사용된 용어 정의(안 제2조)
 - “다자녀 학생”, “교육비”, “수익자부담경비”
-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다자녀 학생
- 교육비 지원 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 수업료, 입학금,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수익자부담경비, 등
- 매년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교육비 지원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지원대상자의 신분변동으로 지원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최광주)

- 본 제정 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최근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출산장려 문화조성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음.

- 2017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06명으로 OECD 35개 회원국 중 꼴찌이며, 우리 충청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여서 최근 3년 간 도내 합계출산율이 평균 1.3명대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2014년 1.37명, 2015년, 1.41명, 2016년 1.39명). 학생 수도 해마다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고, 이에 따라 폐교도 지속적으로 이러지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은 상위법 위반 사항이 없고,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지역사회의 출산 장려 문화 조성 및 출산장려 정책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 사료됨.
- 다만,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우리 도의 다자녀 교육비 지원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도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확한 현황 조사와 조례에서 담고 있는 각종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을 위한 예산산출 및 예산확보에 대한 세부방안 마련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 론 요 지: “생략”

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학생의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을 말한다.
2. “교육비”란 수업료, 입학금,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수익자부담 경비 등 학교교육활동과 입학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3. “수익자부담경비”란 수업료, 입학금 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재학 중인 다자녀 학생에게 적용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한다)

제4조(교육비 지원)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교육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업료, 입학금
2.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3. 수익자부담경비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의 교육비 중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교육감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6조(교육비 지원 중지 및 환수)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원대상자의 신분변동으로 지원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② 교육감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에게는 지급된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교육비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5.23.>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 평생교육법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 부당집행 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 ③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의 복무·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④ 「초·중등교육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⑤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절차, 입학자격, 교원자격 등과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인가 기준·절차, 학사관리 등의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 ⑥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준하여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 ⑦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학생 처리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⑧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재산관리, 회계 및 교원 등의 신규채용에 관한 사항은 각각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9조 및 제53조의2 제9항을 준용하고, 장학지도 및 학생의 학교생활기록 관리는 각각 「초·중등교육법」 제7조 및 제25조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3.27.>

충청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다자녀 학생의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

2. 비용 발생 요인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고자 유·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셋째 자녀 이후 교육비 지원 비용 발생

3. 관련조문

제4조(교육비지원)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교육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전체 국·공·사립 각급학교 학생 중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이후 학생 전수 조사
- 셋째 이후 학생 중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현장체험학습비, 교복구입비, 교과서대를 지원받지 않는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85,198,050	17,039,610	17,039,610	17,039,610	17,039,610	17,039,610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923,750	184,750	184,750	184,750	184,750	184,750
수업료	23,275,000	4,655,000	4,655,000	4,655,000	4,655,000	4,655,000
학교운영지원비	4,230,000	846,000	846,000	846,000	846,000	846,000
급식비	13,824,125	2,764,825	2,764,825	2,764,825	2,764,825	2,764,825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27,070,000	5,414,000	5,414,000	5,414,000	5,414,000	5,414,000
현장체험학습비	10,716,950	2,143,390	2,143,390	2,143,390	2,143,390	2,143,390
교복구입비	3,162,000	632,400	632,400	632,400	632,400	632,400
교과서대	1,996,225	399,245	399,245	399,245	399,245	399,245

다. 재원조달방안

다자녀 교육비 지원금(매년 17,039,610천원): 전액 교육비특별
회계 예산 확보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붙임

6. 작성자: 행정국 교육복지과장 이건영